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화사업

- 취득세·등록세 전액면제 → 50% 경감하되,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⑤ 반대급부적 성격의 응익세로서 목적세인 『사업소세』의 감면 축소

가. 사업소세 50% 경감 → 과세전환

-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사업소세 전액면제 → 전액 과세전환

- 농업회사법인 - 영농·영어조합법인

⑥ 신설 법인에 대한 감면

○ 국립암센터(2000년말 개원예정)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전액면제

⑦ 법인해산(폐지) 등에 따른 감면 폐지 및 정리

가. 농지개량조합이 2000.1.1 농업기반공사에 통합되므로 규정 정리

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및 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심사평가원으로 변경(2000.7.1)됨에 따른 정비

나. ASEM 회의장에 대한 감면 폐지

- ※ 2000.12.31이전에 신·증축한 부동산에 대해 2001.12.31까지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경감토록 함.

⑧ 건설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지원 등

가. 대도시에 소재하는 모회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시 등록세 중과 제외

나. 별도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하여 모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

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이행을 위하여 분양계약된 주거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면제